

미가공 목재 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세계 각 국에 확산되어 가고있어, 목재파렛트, 수출포장업체와 무역업계의 올바른이해와 대응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파렛트 뉴스는 미가공 목재 포장재에 대한 개요와 그 대응책을 특집으로 실는다.

특 집 I

미가공 목재 포장재 규제 개요

1. 문제의 발단

- ① 1998년 12월 18일부터 중국산 미가공 목재 포장재에 대한 규제 실시
: 검역증명서 첨부, 미첨부시 검역실시, 통관보류 반송 등 조치
- ② 규제 발동이유
: 뉴욕주 산림훼손곤충 긴뿔딱정벌레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미가공 목재 포장재로부터 유입되었다는 조사보고

2. 세계각국 확산

중국은 이에 대해 2000. 01. 01부터 미국과 일본에 대해 소나무 흰개미의 유입 규제 명분으로 규제 실시. 이후 핀란드,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EU, 브라질, 칠레 등으로 확산.

3. EU(유럽연합)

2001. 10. 01부터 가맹국 전부가 실시. 오스트리아는 07. 01부터 실시

4. IPPC(세계식물보호협약)

IPPO(세계식물보호협약기구)는 2000년 5월 WG Group 설치 국제기준안 제정작업 실시 2차 작업단 회의 개최. 2002년 5월 기준안 상정 절차 진행중

5. 결론

세계각국의 환경문제와 관련 이러한 규제는 이제 한시적이거나 국부적인 조치가 아니라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로 크로즈업 되었음.

세계 각국의 수출입화물이 하역기계화가 보급되면서 이에 필수적인 수출화물용 파렛트 사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 연간 약 600만매의 수출화물에 목재파렛트를 생산 사용하고 있어(목재파렛트가 가격·제작기일 등에서 절대적임) 세계 각국의 이러한 규제조치로 인하여 수출화물의 반송, 통관보류, 강제 검역비용추징 등의 불이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

(사)한국파렛트협회는 식물검역소, 산림청, 파렛트 생산 메이커 등과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는 바 수출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